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94 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한기호·김성원·강선영

김용태 · 김선교 · 김정재

권성동 · 조지연 · 유용원

김은혜 · 김종양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「군형법」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,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(公然性)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,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.

이에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(안 제64조)

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,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,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.

나. 초병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(안 제65조)

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,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.

법률 제 호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 중 "금고"를 "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금고"를 각각 "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금고"를 "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"으로 한다.

제65조 중 "금고"를 "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상관 모욕 등) ① 상관을	제64조(상관 모욕 등) ①
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	
이하의 징역이나 <u>금고</u> 에 처한	
다.	천만원 이하의 벌금
② 문서, 도화(圖畫) 또는 우상	②
(偶像)을 공시(公示)하거나 연	
설 또는 그 밖의 공연(公然)한	
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	
3년 이하의 징역이나 <u>금고</u> 에 처	
한다.	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	③
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	
이하의 징역이나 <u>금고</u> 에 처한	금고 <u>또는</u>
다.	3천만원 이하의 벌금
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	4
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	
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<u>금고</u> 에	<u>금고</u>
처한다.	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65조(초병 모욕) 초병을 그 면	제65조(초병 모욕)
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	
의 징역이나 <u>금고</u> 에 처한다.	금고 또는 <u>1천만</u>
	<u>원 이하의 벌금</u>